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31.

발의자 : 최수진 · 한지아 · 신성범
유용원 · 박정하 · 구자근
김소희 · 김예지 · 성일종
이상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.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. 한편,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를, 이후 2년간은 50%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.

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따라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~ ⑩ (생 략)	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---	---